■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법인 명칭	
	법인 소재지	법인 전화번호
	대표자(이사·청산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신청인		주무관청		주무관청		주무관청

210㎜×297㎜[백상지 80g/㎡]